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근무수당 수령 부적정(상시 종사 미충족)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지급 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 2024.8.29.)
V.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판매업소, **시설, *** 충전소 등 안전점검 업무의 경우

■■과 직원(2명)은 ‘**판매업소, **시설, *** 충전소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여 상시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4. 3월부터 2024. 10월까지 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477,410원을 수령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점검 실시 기간에만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인 2022. 6월부터 2022. 10월, 2023. 4월부터 2023. 5월, 2023. 7월부터 2023. 10월, 총 11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5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1] 위험근무수당 지급 및 부적정 내역 : 개별내역 별도 통보

나. *****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의 경우

■■과에서는 ‘*****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직무는 간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로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아래 [표 2]와 같이 위험근무수당 총 661,28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위험근무수당 지급 및 부적정 내역 : 개별내역 별도 통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 ■ 과 장 은

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1,688,69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 대상기간 이후 지급된 수당은 자체 반납처리